

Q & A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Q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상층은 피난계단 설치 대상이고 지하층은 특별 피난계단 설치대상 건물인데, 1층 피난층에도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에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규 내에 별도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피난층(1층)에도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Q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건물의 평가방법은 원가방식(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며, 평가대상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촉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현재가액(시가액)을 산출합니다. 실무적으로 재조달가액 산출 시 한국감정원에 서 발행하는 건물신축 단가표를 적용하여 건물의 재조달가액을 산출합니다.

Q 위험물 저장 및 제조업체 관계자입니다. 공장 이전으로 인해 기존공장을 공장폐쇄 신고했으며, 현재 신 공장에서 공장등록 및 위험물 허가를 득하여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구 공장의 위험물 저장소의 경우 위험설비가 없으므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나, 제조소의 경우 취급설비가 남아있어 현재 용도폐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구 공장의 경우 위험물의 저장 및 제조가 일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근무 인원 역시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서 공장 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공장이 공장폐쇄신고가 진행 중에 있어도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공장 내에 상주해야 합니다.

Q 건물 내 화재 시 비상용(비상용 포함)승강기의 운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비상용(상용)승강기의 운행을 규정한 법규는 없으며,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733호(2008.11.7) “승강기 검사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 비상용 전(비상호출스위치·비상호출버튼·1차 소방스위치 및 2차 소방스위치의 조작에 의한 모든 운전)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 층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승객용 승강기는 화재 시 최하층으로 이동하여 운행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Q 제연덕트가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에 방화댐퍼를 설치하는데, 방화댐퍼 퓨즈온도가 보통 72°C와 280°C 중 280°C를 사용합니다. 280°C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제연용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280°C 이상의 퓨즈 사용은 일본 소방법에서 나온 온도입니다. 참고로 NFPA의 기준에는 “제연설비 내의 방화댐퍼의 작동온도는 141°C 이하, 방화·방연댐퍼의 작동온도는 177°C 이하 또는 설계 최대온도보다 10°C(50°F) 높은 것 중 높은 값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아파트 각 세대 현관에 시공될 갑종 방화문과 관련하여, 기 발급된 방화문 시험성적서(적합)와 다른 부속자재를 사용, 설치하고자 할 경우(예시-시험성적서 : 도어록, 실제 사용품 : 디지털 도어록 등)와, 방화문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철판, 도어록, 힌지, 내부충진재 등)하여 제작하였으나 시험성적서 상의 크기보다 클 경우 각각 재시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국토해양부고시(참고: 2009-274호, 287호, 863호) 제5조 ④항에서는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 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 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원통형 도어록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하여야 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1항 10에 의거하여 도어클러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봇힌지에서 경첩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가 틀려진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2. 발급된 성적서 상의 크기보다 큰 방화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별도의 시험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고시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하나의 룸에 전산설비가 설치되어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였는데, 일반창고로 용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가스계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을 용도 변경(전산설비→일반창고)한 경우, 창고의 저장대상물에 따른 적응성 및 약제량을 만족한다면 기존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